

정 관



3차 개정(2020년 5월 15일)

서울특별시

아름다운 소통
시상과 연애하기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단체는 “비영리민간단체 세상과연애하기”(이하, “본 단체”라 한다.)라 한다.



제2조 (소재지)

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로 7길 51에 두며,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

1. 본 단체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올바른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본 단체는 개인간, 세대간, 계층간 소통에 단절된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4조 (사업)

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소통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및 각 단체를 연결하는 지역 문화 공연 기획 사업
2. 풀뿌리 모임 활성화를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
3. 지역 내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노인 복지 프로그램 연계사업
4.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
5. 기타 단체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서울특별시

제 2 장 회 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,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 외 의결권을 갖기로 요청한 자(개인 또는 단체).
2. 후원회원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순수 후원을 희망한 자(개인 또는 단체).

(이하 “회원”으로 통칭한 경우는 1, 2를 모두 포함한다.)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정회원(개인 또는 단체)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후원회원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(정회원), 후원회비(후원회원) 및 제 부담금의 납부 (단, 미성년자는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.)

제8조 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탈퇴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 (정회원의 상벌)

- ①본 단체의 정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본 단체의 정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

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 사 장 1 명
2. 상임이사 1 명
3. 이 사 4명이상 15명 이하(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)
4. 감 사 1 명

제11조 (임원의 선임)

-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제28조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.
-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
-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

야 한다.

제14조 (상임이사)

- ①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5조 (임원의 임기)

-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임원은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며 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.
-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 (임원의 직무)

- ①이사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-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1. 본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본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-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8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 (구분 및 소집)
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, 이사회 결정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후로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, 전자메일,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각 회원(정회원, 후원회원 포함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 (의결정족수)

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23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24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 (구분 및 소집)

-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정기이사회는 각 이사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, 전자메일,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 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28조 (의결정족수)

-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 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5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9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0.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0조 (의결권의 제한)

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1.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본인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3.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제31조 (의사록)

①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일시 및 장소
2. 재적 이사 수 및 성명
3. 출석한 이사 수 및 성명
4. 심의·의결사항
5.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

②의사록에는 이사장과 해당 회의에 출석한 이사 중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제32조 (재산의 구분)

①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 및 수입으로 구성한다.

1.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
2. 본 단체의 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
3. 기부금품
4. 이사회비
5.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
6. 회비(정회원), 후원회비(후원회원) 그 밖의 수입

제33조 (경비지출)

본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운영재산으로 지출한다.

제34조 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5조 (수입금)

본 단체의 수입금은 정회원의 회비, 후원회원의 후원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6조 (회계연도)

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 (예산편성)

본 단체의 세입·세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매년 3월31일까지 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38조 (준예산)

①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 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수입·지출행위를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9조 (결산)

이사장은 본 단체의 사업보고 및 결산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, 지출결산서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, 주요재산 증감계산서,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40조 (특별회계)

본 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1조 (차입금)

①본 단체는 신규차입으로 1년 이상의 차입금 총액이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본 단체는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2조 (잉여금)

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목적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3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4조 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 무 처

제45조 (설치 등)

-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.
-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46조 (비치서류 및 장부)

본 단체의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정관
2. 임원 및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
3. 허가, 인가 및 등기에 관한 서류
4. 이사회의 회의록
5. 수입,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
6. 자산, 부채 및 주요 재산상황에 관한 서류
7.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
8.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및 장부

제 8 장 수 익 사 업

제47조 (수익사업)

- ①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, 총회에 보고한다.
-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48조 (수익사업의 기금관리)
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목적재산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9 장 보 칙

제49조 (해산)

- ①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본 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50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1조 (규칙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, 총회에 보고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본 단체의 고유번호증발부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비영리 민간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부 칙 (2018. 2. 28. 2차 개정)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8년 정기총회의 의결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개정 당시 회원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졌으므로 부칙 제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.

제3조 (개정정관의 기명날인)

본 정관 개정 당시 회원의 출석 및 기명날인과 위임 의결한 회원의 위임장을 별첨하여 그 개정 의결을 확인하고 단체의 인감으로 기명날인한다.

부 칙 (2020. 5. 15. 3차 개정)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0년 5월 15일 총회의 의결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개정 당시 회원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졌으므로 부칙 제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.

제3조 (개정정관의 기명날인)

본 정관 개정 당시 회원의 출석 및 기명날인과 위임 의결한 회원의 위임장을 별첨하여 그 개정 의결을 확인하고 단체의 인감으로 기명날인한다.

[정관의 제·개정]

정관 제정	2011년 3월 10일
1차 개정	2012년 8월 30일
2차 개정	2018년 2월 28일
3차 개정	2020년 5월 15일

비영리민간단체 세상과 연애하기



서울특별시

